

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 제안 설명명

환경수자원위원회 김경훈 의원

- 존경하는 봉양순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!
안녕하십니까? 김경훈 의원입니다.
- 본 의원이 발의하고 24명 의원이 찬성한 「서울특별시 야생조류 충돌 방지 조례안」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하며, 동 조례안의 제안 이유와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.
- 동 조례안은 상위법 「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 8조의2에 근거하여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의 인공구조물과 충돌하여 부상을 입거나 폐사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충돌 방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.

□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,

안 제1조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방안을 위한 목적을 규정하고,

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하였으며,

안 제4조에서는 야생조류 충돌 방지 대책 실시 및 심의·자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,

안 제5조에서는 인공구조물 사고발생 피해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였으며,

안 제7조에서는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.

□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,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.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.

감사합니다.